# 김포시 공공심이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이약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11월 16일 오강현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12월 11일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12월 11일

#### 2. 제안이유

○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·일·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이용 보장과 김포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운영 및 지원사업 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관리 및 지정 취소 등 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홍보 및 지원절차 등 (안 제7조 ~ 제8조)

### 4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야시간・토・일・공휴일 중 소아 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 및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**수정안의 요지** :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 취소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고 달빛어린이병원만 단서 조항으로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함.
- 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- 10. 주문사항 : 없음
- 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수정안 1부

#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제3372호

제출년월일 2023. 11. 27. 제 출 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○ 안 제6조 제1항 관련하여, 그 외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(공공심야어린이병원, 공공심야약국)과 달리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○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 취소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하고 달빛어린이병원만 단서 조항으로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(안 제6조 제1항)

###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정 취소를 도지사에게 건의"를 "지정을 취소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출 안	수 정 안
제6조(지정 취소 등) ① 시장은	제6조(지정 취소 등) ①
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	
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	<u>지정을</u>
지정 취소를 도지사에게 건의할	취소
수 있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단,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에
	는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
	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제출안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제출안과 같음)

# 김포시 공공심이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·일·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김포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공심야어린이병원"이란 「의료법」 제33조에 따라 김포시에 개설된 의료 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.
- 2. "공공심야약국"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김포시에 개설된 김포시 내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김포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김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 내에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(이하 "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한다.
- **제4조(지원사업)** 김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
  - 2.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

- 3.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
- 제5조(관리)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 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 용실태 조사 및 지도·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정 취소 등)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단,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지정권자 인 경기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.
  - 1.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
 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3.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「의료법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
  - 4.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  - 5.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원 시책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절차 등)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